국외출장 복명서

일본 국방·군사시설 이전 관련 제도 및 사례 연구

일본 도쿄(東京)

2017.05.23 - 05.26

조판기 연구위원, 구지영 연구원

국토연구원 KRIHS

< 목 차 >

Ⅰ. 출장개요 ····· 1

1. 출장 목적 ····· 1

2. 출장 일정 및 주요 업무수행 ····· 1

Ⅱ. 일본의 국유재산 관리 ····· 2

1. 국유재산의 정의 ····· 2

2. 국유재산의 분류 및 관리기관 ····· 3

3. 국유재산의 현황 ····· 5

4. 국유재산 관리방향 및 법체계 ····· 5

Ⅲ. 일본의 방위시설과 관리방안 ····· 8

1. 방위시설 현황 ····· 8

2. 국유재산으로써 방위시설 관리를 위한 방위성 조직 ····· 9

3. 방위시설관련 법제 ····· 12

4. 방위시설의 관리・처분 ····· 17

5. 특정국유재산 정비 특별 회계의 설치 ····· 18

6. 군사시설 관련 타법 특례 조항 검토 ····· 21

Ⅳ. 일본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례 ····· 24

1. 주일미군 기지 종합계획 : 관동계획 ····· 24

2. 방위청(행정재산) 이전 사례 : 미드타운 ····· 34

Ⅰ.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 군사 선진국인 일본의 군사시설 이전 사례 및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기부대 양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

- 본 연구진은 해당과제 이전에 기부대양여 사업 2건에 대한 검토 과제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파악된 기부 대 양여 제도의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인 사업 검토 기준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
- 일본 도쿄도는 1970년대부터 군사시설 이전 지역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수행해옴

2. 출장 일정 및 주요 업무수행

○ 출장지: 일본 도쿄도

○ 출장일시: 2018년 5월 23일~26일

○ 출장자: 조판기 연구위원, 구지영 연구원

○ 출장일정

〈표 1〉 출장 일정

일정(요일)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5월23일(수)	김포	일본 (하네다)	(16:15) 김포 출발 (18:45) 일본 도착
5월24일(목)			(09:00-18:00) 이타바시구, 네리마구 군사시설 반환지역 답사 - 그랜트 하이츠 주택지구 활용 현황 답사 - 캠프 아사카 부지 활용 현황 답사 - 아사카시청 공원녹지과 면담
5월25일(금)			(10:00-12:00) 방위청 이전부지 개발지역 답사 - 도쿄 미드타운 일대 답사 (14:00-18:00) 다치카와시 군사시설 반환지역 답사 - 다치카와 비행장 부지 활용 현황 답사
5월26일(토)	일본 (하네다)	김포	(12:20) 일본 출발 (14:50) 인천 도착

II. 일본의 국유재산 관리

1. 국유재산의 정의

○ 일본의 국유지는 원래 메이지(明治)시대에 정부의 수립에 따라 국가 조세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지조(地組)개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사유지와 그 이외의 토지를 구별한 것으로부터 시작됨

-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본 전국 토지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사유지로 확인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관유지(국유지)로 편입하여 사유지와 국유지의 구분이 명확히 함

○ 현재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규정된 재산으로,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 선박 및 항공기 등의 동산, 주식 등의 유가 증권 등을 말함

- 국유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유재산법(쇼와 23년 법률 제73호) 제2조 및 부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음(<표 2>참조)
- 현금, 물품, 채권은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음

(국유재산의 범위)
제2조 이 법률에서 국유 재산은 국가의 부담하여 국유가 된 재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부에 의하여 국유가 된 재산으로 다음에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부동산
② 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양식 도크, 항공기
③ ②의 부동산 및 부동산의 부속물
④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들에 준하는 권리
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기타 이들에 준하는 권리
⑥ 주식 신주 예약권, 사채(특별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채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포함, 단기 사채 등을 제외), 지방채, 신탁 수익권 및 이들에 준하는 것 및 출자에 의한 권리(국가가 자금 또는 적립금 운용 및 이에 준하는 목적 때문에 임시로 소유하는 것을 제외)

〈표 2〉 국유재산의 범위

구분		범위
물건	부동산	(1) 토 지, (2) 공작물 (건물 등)
	동산	(1) 선박 , 부표 , 부잔교 , 부양식도크, 항공기, (2) 부동산 및 (1)의 동산의 부속물(승강기 , 냉난방 장치 등)
재산권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광업권, (4) 이상의 것에 준하는 권리(채석권 등)
	지적 재산권	(1) 특허권, (2) 저작권, (3) 상표권, (4) 실용신안권, (5) 이상의 것에 준하는 권리(의장권 등)
	유가증권 등 (국가가 자금 또는 적립금의 운용 및 이에 준하는 목적을 위하여 임시로 소유하는 것은 제외)	(1) 주식, (2) 신주예약권, (3) 사채 (특별 법률에 의한 법인발행의 채권에 표시되어야 하는 권리를 포함. 단기사채 등은 제외), (4) 지방채, (5) 신탁 수익권, (6) 이상에 준하는 권리, (7) 출자에 의한 권리

2. 국유재산의 분류 및 관리기관

○ 각각의 국유재산은 관리 및 처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해「행정재산」,「보통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음(국유재산법 제3조)

- 행정재산은 국가가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소요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며,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황실용 재산, 산림경영용 재산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보통재산은 특별회계에 소속되어 있는 국유재산과 행정재산 이외의 재산을 말함

(국유재산의 분류 및 종류)

제3조

·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분류한다.

2 · 행정재산이란 다음에 언급한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 나라에 있어 나라의 사무, 사업 또는 그 직원(국가공무원숙사법(쇼와 24년 법률 제117호) 제2조 제2호의 직원을 말한다.) 의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또는 제공한 것이라고 결정된 것

(2) 공공용재산 · 나라에 있어 직접 공공용에 제공하고, 또는 제공한 것이라고 결정된 것

(3) 황실용 재산 · 나라에 있어 황실용으로 제공하고, 또는 제공한 것이라고 결정된 것

(4) 기업용재산 · 나라에 있어 나라의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한 직원의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또는 제공한 것이라고 결정된 것

3 · 보통재산이란 , 행정재산 이외의 일체의 국유재산을 말한다.

〈그림 1〉 국유재산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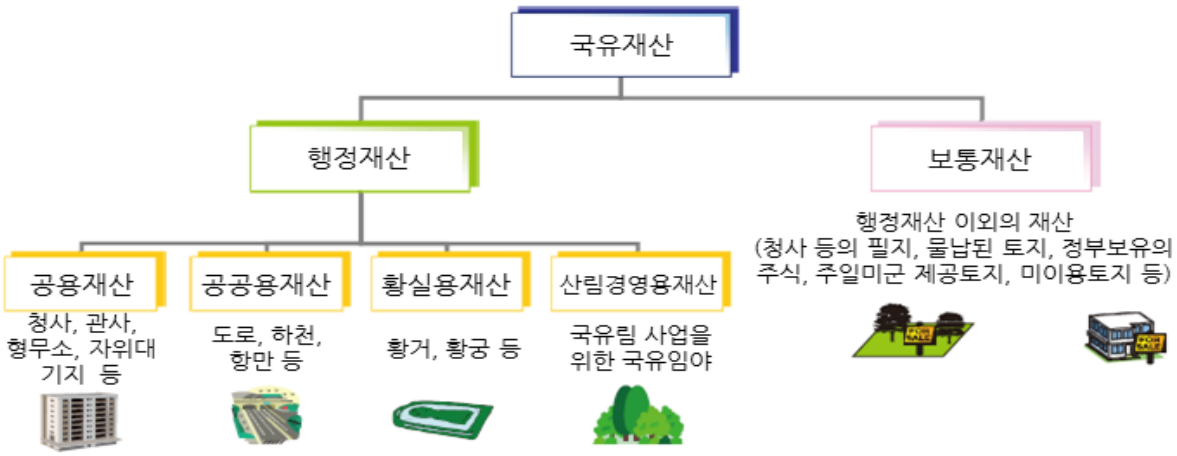

○ 또한, 국유재산의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행정재산, 보통재산의 각각에 대하여 관리 및 처분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관리•처분에 관한 재무대신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행정재산은 각 기관의 장이 관리하며, 재무대신은 각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실하는 총괄권을 가지고 있음
- 보통재산은 재무대신이 관리•처분을 담당하며, 행정재산 중 특별회계에 속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재무대신이 각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는 총괄권을 가지고 있음

(관리 및 처분 기관)
(행정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관)
제5조 각 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의2 두개 이상의 각 기관의 장에서 사용하는 행정 재산 가운데 통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재무 장관이 지정한 재산은 이를 사용하는 각 기관의 장 중에서 재무 대신이 지정하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보통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관)
제6조 보통 재산은 재무대신이 관리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국유 재산의 총괄 기관)
제7조 재무대신은 국유 재산의 총괄을 해야 한다.

○ 특히, 재무성은 총괄청으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 그 관리·처분의 사무를 통일하고, 국유재산의 증감과, 현재액 등을 조사함으로써 관리•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수행
- 각 기관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따라 보통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조정
- 비효율적인 행정 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를 폐지하고 보통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재산, 보통재산에 대하여 전체를 일괄적으로 종합 조정 등

〈그림 2〉 국유재산의 총괄사무와 관리처분 사무의 행정체계

출처: 国有財産行政の現状と将来に向けた課題～地域における国有財産の有効活用について～(2016), 財務省

3. 국유재산의 현황

○ 2016년(평성28년) 기준 국유재산의 현황은 106조 79억엔이며, 그 중 행정재산은 23조 4,645억엔(22.1%), 보통 재산은 82조 5,434억엔(77.9%)이다. (국유 재산 총액은 공공용재산 중 도로, 하천 등은 포함되지 않음)

○ 2016년 현재 국유 재산을 구분별로 살펴보면 정부 출자 등이 76조 6,107억엔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토지가 17조 9,693억엔으로 17.0%이며, 이어서 건물이 3조 3,980억엔 등의 순임

4. 국유재산 관리방향 및 법체계

1) 국유재산 관리방향

○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정책제고를 위하여 국유지의 유지·보존이나 확대보다는 기존 국유지의 관리 효율성과, 고도이용을 통한 국유재산의 유효활용을 도모하고 있음

- 이를 위하여, ①국유재산의 최적이용, ②사회복지시설 분야의 국유재산 활용, ③국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신탁, 교환 등의 다양한 수법의 활용, ④재해발생시의 대응, ⑤부흥재원으로의 공헌 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더불어, 총괄청 지방조직으로서 지방재무국을 설치하여 관할구역별 국유재산실태 조사와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욱 중시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음

2)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방향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경제・사회정세, 토지사정 등의 변화에 따라 국유재산 처분의 촉진에 의한 재정 수입의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며, 지역이나 사회의 요구에 대응한 유효 활용을 추진함

○ 이에 따라 재무성에서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 국유지(보통 재산)의 관리 처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재정 수입의 확보를 도모하도록 하며,

- 또 국유지의 처분에 있어서는 국민 공유의 귀중한 자산임을 감안하여 공용, 공공용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방공공단체 등의 이용 요청을 받아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대여하도록 함.
-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이용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해 처분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리•처분의 기본방향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정한 대가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됨(재정법 제9조 제1항)** 다만, 재정법 제9조 제1항의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등에 의해 **특별히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써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감액 매각 또는 대여하는 것이 가능함(국유재산법 제22조 등)**

○ 일본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상 및 감액 매각 또는 대여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용함

〈그림 3〉 국유지 관리처분 절차의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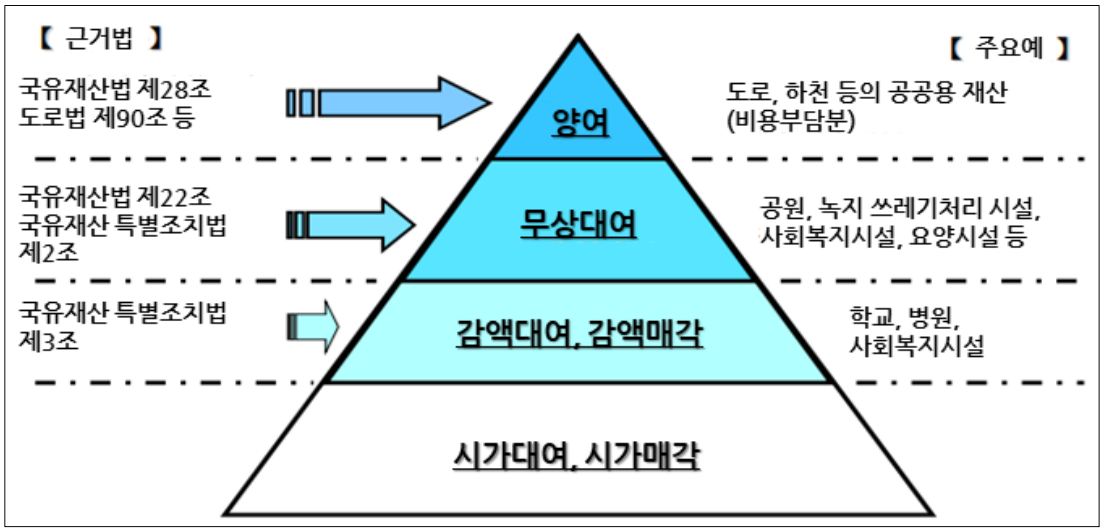

출처: 国有財産行政の現状と将来に向けた課題～地域における国有財産の有効活用について～(2016), 財務省

○ 이와 같이 매각 또는 대여를 함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가격은 신규등록의 경우,** 국유재산으로써 토지를 신규 구입한 때에는 **구입가격**으로 하며, 신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비 등 **취득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기존 국유재산의 가격 변동의 반영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장이 매년 3월 31일 회계연도 말[1]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액을 갱신하고 있음

- **토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를 실시
-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년도 회계연도 말의 대장가격에서 **정액법에 의해 산정한 감가상각분을 제하여 평가**를 실시

3) 국유재산 관련 법체계

○ 일본의 국유재산 관련 법률은 재정법(1947년) 국유재산법(1948년), 국유재산 특별조치법(1952년), 국가 청사 등의 사용조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57년), 국가 공무원관사법(1949년), 회계법(1947년) 등과 그 외 도로법, 하천법 등의 법률이 있음

○ 이 중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총괄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은 국유재산법임

○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법인 재정법 아래에서 나라의 재정 관리 작용에 관한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음

- 재정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헌법의 부속법으로서 국가의 예산 외 재정의 기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정 관련 중심법임
- 또한, 국가 재정 관리를 위한 법률로는 회계법, 물품관리법, 국가의 채권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등이 있음

〈그림 4〉 국유재산 관련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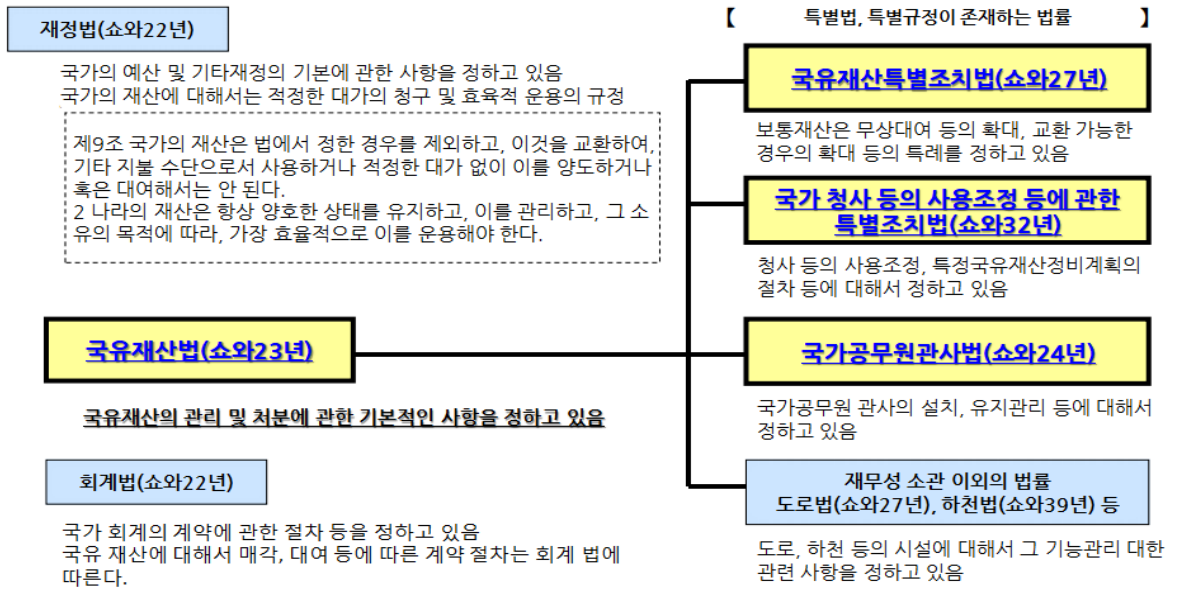

출처: 国有財産に関する法体系(2017), 財務省

1) 일본의 경우 회계연도 말은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Ⅲ. 일본의 방위시설과 관리방안

1. 방위시설 현황

○ 국유재산법에 의한 방위시설 및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 사이의 서로 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 제 6조에 근거한 시설 및 구역 및 일본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한 국유의 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군용지를 방위시설이라 함

○ 이러한 방위 시설은 용도가 다양하며 넓은 땅을 필요로 하는 것이 많으며, 미 일 공동 훈련과 훈련의 다양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주일미군시설 구역(전용 시설)의 토지 면적 중 약 25%를 일미지위협정에 근거하여 자위대가 공동 사용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에 정한 국유재산 사무의 주체인 재무성 자료에 의하면 국사시설의 소관 정부부처인 방위성에서 소유한 국유재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군사시설의 현황을 보통재산(주일미군 주둔 시설)과 행정재산(자위대 시설)으로 구분하여 살펴 봄.

- 보통재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및 건물을 합한 전체 면적이 약0.78㎢이며, 금액적 가치로는 약 2,794억엔이며,
- 행정재산의 경우 토지 및 건물을 합한 전체 면적이 1000.40㎢이며, 그 가치는 7조 1,894억엔임

〈표 3〉 일본 정부 기관별 국유재산 현황(2017년 3월 31일 기준)

(단위:천㎡, 백만엔, %)

구분	행정재산 (자위대시설 현황)			보통재산 (주일만군 제공 시설 현황)			합계			가격 비율
	가격 (건물+토지)	토지가격	면적	가격 (건물+토지)	토지가격	면적	가격 (건물+토지)	토지가격	면적	
방위성	7,189,403	3,971,373	1,000,404	279,374	18,593	771	7,468,777	3,989,966	1,001,175	10.1
비율	28.4			71.6			100.0			
	19.9	·	·	50.2	·	·	70.1	·	·	·

자료 : 재무종합정책연구소[2] 재정금융통계월보 제790호 국유재산 (2018년 2월호)

2) http://www.mof.go.jp/kankou/zaikinge01.htm

○ 방위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자위대 시설의 경우에는 북해도 지방에 가장 많은 자위대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 중부지방, 동북지방, 관동지방 등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 주일미군 시설의 경우에는 오키나와현에 약 226㎢로 전체 주일미군 시설 면적의 74%가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동북지방에 11%, 관동지방에 8%가 위치하고 있음

2. 국유재산으로써 방위시설 관리를 위한 방위성 조직

○ 방위성(防衛省, Ministry of Defense)은 일본의 중앙 부처의 하나로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켜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육상 자위대, 해상 자위대, 항공 자위대 그리고 일본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실시하는 조직

- 국가 행정 조직법 제3조 제 2항 및 방위성 설치법 제2조에 근거해 설치
- 방위성 설치법 제4조에 의한 방위성 사무는 다음과 같음.

○ 1950년 전신인 경찰 예비대 본부가 발족한 후 보안청, 방위청을 거쳐 2007년 1월 일본 중앙부처의 하나인 방위성으로 이행

○ 방위성 조직은 총 6개의 내부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외에 6개의 심의회, 3개의 시설기관, 13개의 특별기관 12개의 지방방위국으로 이루어져 있음

- 내부부국은 장관실, 방위정책국, 운용기획국, 인사교육국, 경리장비국, 지방협력군 등이 있음
- 심의회는 자위대원윤리심사회, 방위시설중앙심의회, 포로자격인정등 심삼회, 독립행정법인평가 위원회, 방위인사심의회, 방위조달심의회 등
- 시설등 기관에는 방우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 방위연구소 등
- 특별기관에는 방위회의, 통합・육상・해상・항공막료간부회의, 육상・해상・항공자위대, 정보본부, 기술연구본부, 장비시설본부, 방위감찰본부, 외국군용품심판소 등

〈표 4〉 방위성 조직 및 업무내용

구분	조직부서	업무내용	비고
내부부국	장관, 방위정책국, 운용기획국, 인사교육국, 경리장비국, 지방협력국	•정책적·행정적 방위대신을 보좌	-
심의회등	자위대원윤리심사회, 방위시설중앙심의회, 포로자격인정등심사회, 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 방위인사심의회, 방위조달심의회	•심의업무	-
시설 등 기관	방위대학교, 방위의과대학교, 방위연구소	•방위성 산하의 시설	-
특별기관	방위회의, 통합막료간부회의, 육상막료간부회의, 해상막료간부회의, 항공막료간부회의,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정보본부, 기술연구본부, 장비시설본부, 방위감찰본부, 와국군용품심판소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되어 전문성이 강하고 상당한 규모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	-
지방지분부국	지방방위국	•방위성의 사무를 분장 하는 지방 파견기관 •총 12개의 지방방위국이 있음	·홋카이도 방위국 (삿포로시), ·오비히로 방위 지국 (오비히로시), ·토호쿠 방위국 (센다이시), ·키타칸토 방위국 (사이타마시), ·미나미칸토 방위국 (요코하마시), ·킨키 중부 방위국 (오사카시), ·토카이 방위 지국 (나고야시), ·츄고쿠 시코쿠 방위국 (히로시마시), ·큐슈 방위국 (후쿠오카시), ·나가사키 방위 지국 (나가사키시), ·쿠마모토 방위 지국 (쿠마모토시), ·오키나와 방위국 (나카가미군 카데나쵸)

출처:防衛省 홈페이지

〈그림 5〉 방위성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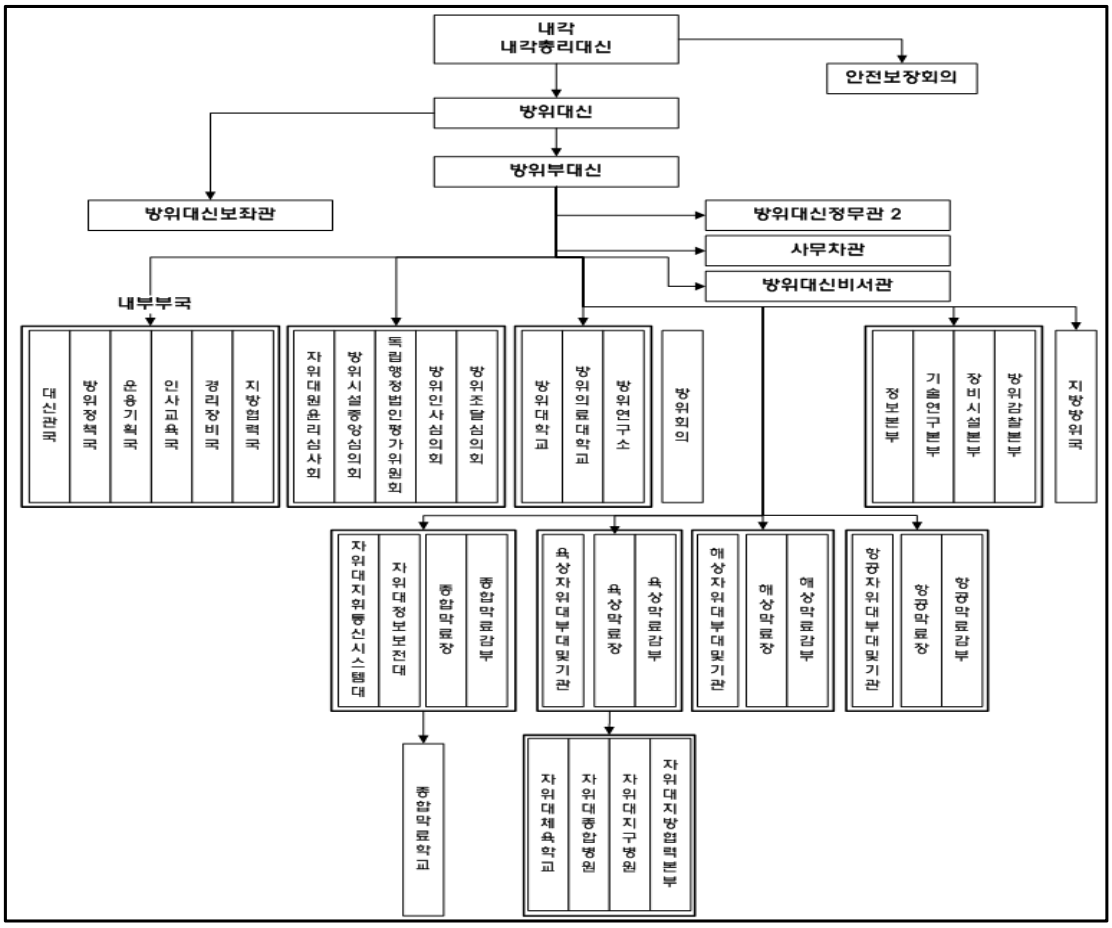

출처:防衛省 홈페이지

○ 방위시설 관련 조직으로 기존에는 1962년 11월 조달청과 방위성 건설부가 통합된 방위시설청(防衛施設庁)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통해서 방위시설의 취득·관리·처분 등의 업무를 처리

○ 2006년 1월 방위시설 건설사업 및 방위장비 입찰에 있어서 담합사건이 발각되면서 방위시설청은 폐지되고, 현 방위성의 한 조직으로 통합

○ 통합된 후 현재 방위성 조직 내에는 방위성 조직령에 의해 방위시설과 관련한 조직을 두고 있음

- 시설정비과, 시설관리과, 보상과, 지방조정과 등의 3개의 과가 있음
- 시설 정비과에서는 방위성 관활의 국유재산 관리의 기본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위대 시설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및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업무를 봄
- 시설관리과에서는 자위대의 시설의 취득에 관한 업무, 방위시설 주변 환경 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보상과에서는 방위시설 주변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에 대해 방위시설 주변 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손실보상, 자위대 또는 주류군이 사용하고 있는 구역에 관계된 권리이익에 관하여 생긴 손실에 대한 보상업무 등을 담당
- 지방조정과에서는 지방공공단체 및 지역주민의 이해 및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정업무 등을 담당

○ 또한 방위시설 중앙 심의회 및 방위시설 지방 심의회를 설치하고 있음

-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서로 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 제6조에 근거한 시설 및 구역 및 일본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한 토지등의 사용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쇼와 27년 법률 제140호) 에 의해 방위시설 중앙 심의회의 사무를 봄
- 지방 부국에 방위시설 지방 심의회를 두어 방위시설 사무를 봄
- 방위시설 지방 심의회는 위원 20인 이내에 조직하며, 회장 1인, 간사 5인 이내를 두며, 간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임명

〈표 5〉 방위시설 관련 조직 및 업무내용

조직	업무내용
시설 정비과	제40조 · 시설 정비과는 , 다음에 언급한 사무를 맡는다. 1 · 방위성 관할의 국유재산의 관리의 기본에 관한 것. 2 · 자위대의 시설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및 기본적인 정책의 기획 및 입안에 관한 것. 3 · 건설 공사 계획의 인정에 관한 것. 4 · 건설 공사 입찰 및 계약에 관한 것. 5 · 토목공사 및 통신 공사 시행의 수탁 및 실시의 기본에 관한 것. 6 · 방위성 관할의 건축물에 관한 사무의 총괄적인 것.
시설 관리과	제42조의 8 · 시설 관리과는 , 다음에 언급한 사무를 맡는다. 1 · 자위대의 시설의 취득에 관한 것 2 · 주류군의 사용에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의 취득 및 제공 시설의 반환에 관한 것 3 · 위치 경계 명확화 법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주류군용지등에 관계된 각필지의 위치 경계명확화 및 관련된 조치에 관한 것 4 · 방위시설 주변 환경 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관한 것 5 · 방위 원조 협정의 실시에 관계된 부동산 및 비품의 조달,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것.
보상과	제42조의 7 · 보상과는 , 다음에 언급한 사무를 맡는다. 3 · 방위시설 주변 환경 정비법 제13조 제1항 및 특별손실 보상 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것. 9 · 자위대 또는 주류군의 사용에 의하고 자위대의 시설 또는 주류군에게 제공한 시설 및 구역에 관계된 권리이익에 관하여 생긴 손실보상에 관한 것(주변 환경 정비과의 소장에 속한 것을 제외한다.) . 10 · 주류군이 항구, 비행장 및 도로(주류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시설 및 구역인 · 것을 제외한다.) 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손실보상에 관한 것.
지방 조정과	제42조의 4 · 지방 조정과는, 법제 4조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 제6호, 제9호, 제12호로부터 제14호까지, 제19호에 언급한 사무에 관하여 지방공공단체 및 지역주민의 이해 및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락 및 조정 사무에 관한 것

출처:防衛省 홈페이지

○ 현 한국의 국방부의 조직과 비교하여 보면 군사시설기획관의 업무와 유사한 조직을 두고 있으나 한국과 비교하여 특징적인 부분은 지방조정과를 두어, 지방정부와의 관계 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음

- 이는 방위시설의 취득 및 방위시설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임

3. 방위시설관련 법제

○ 방위시설 관련 법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헌법에서 군대를 소유하지 않도록 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자국의 보호 및 경비를 목적으로 한 자위대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주류미군에 대한 법제의 정비가 각각 별도로 제정되어 있음.

○ 방위시설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미국 주류군에 관련된 법률, 군사시설의

재편을 위한 법률,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낙후 및 주민의 생활환경의 정비를 위한 법률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 할 수 있음

1) 미국 주류군에 관한 법률

○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제6조에 근거하는 시설 및 구역 및 일본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하는 국유의 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주일미군의 이용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국유의 재산에 대해서, 그 관리 및 처분의 특례 등을 규정＜관계 정령·부령＞

○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연합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하는 토지 등의 사용 및 어선의 조업 제한 등에 관한 법률

- 국제 연합군의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토지 등의 사용 및 수면을 사용시키기 위한 어선의 조업의 제한등 및 이것에 수반하는 어업 경영상의 손실의 보상을 규정

○ 일본과 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제6조에 기초하여 시설 및 구역과 관련하여 주일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와 토지등의사용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주류군용지특별조치법)이 있음 (쇼와 27년 5월 5일 법률 제 140호)

- 주류군이 토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토지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 주류군용지특별조치법으로 사용 및 수용
-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용을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지방방위국장이 관계인의 의견서 및 관련서류를 방위대신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방위대신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을 청취하여 토지 등의 사용 및 수용에 관한 처분의 통지, 고시 및 공고를 하여야 함.

○ 주류군용지 특별조치법

- 일본과 아메리카 합중국과의 사이의 상호 협력 및 안전 보장 조약 제6조에 근거하는 시설 및 구역, 그리고 일본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실시하기 위해 일본에 주둔하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군대(이하「주류군」이라고 한다.)에 제공하는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한 규정

2) 군사시설 재편에 관련된 법률

○ 주류군등의 재편의 원활한 실시에 관한 특별 조치법(평성 19년(2007년) 5월 30일 법률 제67호)

- 주일미군 등의 재편에 의한 방위 시설의 주변지역의 주민생활 편리성의 향상 및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주일미군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주)일본 정책 금융 공고'의 업무의 특례 및 재정상의 특례 등을 규정
- 재편 관련 특정방위시설의 지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방위시설에 대해서 그 주변지역의 주민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편 관련 특정 방위 시설로서 방위대신이 지정 가능

(재편 관련 특정 방위 시설의 지정)
제4조
1, 주일미군 등의 재편으로서 주일미군 혹은 자위대의 부대 혹은 기관의 편성이 변경되어 새롭게 배치되는 것
2, 주일미군 등의 재편으로서 다른 방위 시설에 소재하는 주일미군 또는 자위대의 부대 또는 기관이 훈련을 위해서 새롭게 사용하는 것
방위 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라고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 주류군 용지 철거지의 유효 이용의 촉진

- 오키나와현에는 일본 미군 전용시설·구역의 74.3퍼센트가 집중하고 있어 그 시설·구역은 대규모 및 고밀도로 형성되어 오키나와의 발전상 중요한 위치에 소재
- 오키나와 진흥 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과 주민의 노력으로 본토와의 격차는 점차 축소되는 등 지속적 성장을 보임
- 그러나 오키나와의 미군 시설·구역은, 현재에도 오키나와 총면적의 10.2%, 특히 인구, 산업이 집중하는 오키나와 본섬은 18.4%를 차지하고 있어 현민의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 도시의 형성, 체계적인 도로망의 정비등, 사회경제의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 토이용상의 큰 제약
- 따라서 미군시설·구역의 재편과 동시에 종전부지에 대해서 양호한 생활환경의 확보, 새로운 산업의 진흥, 건전한 도시의 형성, 교통 체계의 정비, 자연 환경의 보전·재생 등 오키나와 진흥을 위한 공간으로서 현토지이용 구조의 재편을 시야에 넣은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 필요 또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각각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철거지 이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반환 현황

- 전체의 반환율이 15.2%로서(1997년기준) 기지의 반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표 6〉 미군 전용 시설의 반환 상황

구분	본토	오키나와
1972년 5월	19,699 ha	27,850 ha
1997년 3월	7,902 ha	23,498 ha
반환율	59.9%	15.6%

○ 주류군 용지 철거지의 이용 상황

- 반환된 주류군 용지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나 토지 개량 사업 등의 공공사업이나 민간에 의한 개발을 하고 있어 도시 지구의 주택지의 확보나 부족하기 쉬운 공공시설의 건설, 농지의 확대 혹은 공업용지에 사용되는 등 지역 진흥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쇼와 36년부터 평성 19년 3월 31일까지 반환된 주류군 용지는 12,302.6헥타르로, 그 중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정비된 것(실시중 및 계획중을 포함)이 반환 면적 전체의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 이용 형태로 보면 개인, 기업에 의한 이용이 약 31%로 가장 많아, 그 중의 약 절반이 토지 개량 사업이나 토지구획 정리 사업 등의 공공사업이 실시된 것이며, 그 다음으로 자연 환경 보전 숲 등의 보전지로서 이용이 약 29%, 나라나 지방공공단체 등에 의한 공공의 이용이 약 20%가 되고 있다. 그 외에, 자위대의 이용이나 미군에의 재제공, 지형적으로 사용이 곤란 등에 의한 이용 곤란지 등이 13.3%임

○ 공공사업에 의한 정비

- 공공사업에 의한 정비대상 철거지는 4,406.2ha로, 반환면적 전체의 35.8%이며, 그 가운데 4,136.6ha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실시중이 16.7ha, 사업계획중이 107.9ha임.
- 북부지역에서는 토지개량사업, 농지개발사업, 수자원, 도로정비 등의 사업이 실시되며, 중부지역은 택지개발과 공공시설용지의 수요가 높아 도시지역중심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공시설정비사업이 주로 실시되고 있음

- 도시근교의 농촌지역에서는 토지개량종합정비사업과 농업기반정비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음

○ 공공의 이용

- 도로와 댐용지 등의 각각의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는 철거지는 2,505.4ha로 철거지 전체 면적의 20.4%임.

○ 개인, 기업의 이용

- 개인과 기업에의한 주택용지, 공업용지, 상업용지, 농업용지 등의 철거지 이용은 3,820ha로 반환면적 전체의 31.1%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에 토지개량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공공사업이 실시된 철거지가 1,900.8ha로 전체면적의 15.5%, 그 이외가 1,919.9ha로 15.6%임.
- 북부지역은 농업지의 이용이 많고, 그 외에는 리조트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또한 중남부지역은 농업지, 택지, 리조트시설, 골프장, 호텔 등에 활용되고 있음.

○ 자위대의 이용

- 미군으로부터 인계되어, 자위대기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철거지는 486.5ha로 반환면적전체의 4.0%임.
- 북부지역은 항공자위대 교육훈련장, 중부지역은 육상자위대 교육훈련장 등이 있으나, 그 대부분은 남부니역에 집중해 있으며, 항공자위대기지, 항공자위대 교육훈련장, 항공자위대 주둔지 등이 있음.

○ 미군 재 제공

- 반환후에 다시 미군에 제공되어진 철거지는 320.0ha로 반환면적 전체의 2.6%이며, 그 대부분이 북부지역의 북부훈련장임.

○ 보전지의 이용

- 보전지로서의 이용되고 있는 철거지는 3,529.5ha로 반환면적 전체의 28.7%이며, 그 대부분이 북부지역에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림, 수원함양림, 재해방비림 등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이 도모되고 있음.

○ 이용이 어려운 지역

- 철거지이용이 어려운 토지, 이용미정지역 등은 1,640.5ha로 반환면적 전체의 13.3%를 점하고 있으며, 철거지 관계의 지역에 있어서는 토지소유

권 정비 등 가능한 한 철거지의 유효이용을 추진

- 지형적인 사용이 곤란하거나, 개발이 어려운 지역, 철거지이용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거나, 또는 합의형성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지역, 유효한 철거지 이용의 도모가 어려운 지역 등 문제가 있는 지역

3) 방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련된 법률

○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

- 자위대 등의 행위또는 방위시설의 설치 또는 운용에 의해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 방위시설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 등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와 손실을 보상을 규정

○ 오키나와 진흥 특별조치법(평성 14년 법률 제14호)

- 오키나와(沖繩)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오키나와 지역 진흥계획을 책정 및 이것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 등의 사항을 규정

4. 방위시설의 관리•처분

1) 일반 매수자에게의 토지매각 절차

○ 일반 매수자는 우선 물건의 항공사진, 지적병합도 등의 지도, 공도, 군용지가격이 명기되어 있는 토지가격 산정 조서,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

- 군용지의 특성상 현지 확인이 불가
- 토지의 번지, 토지가격, 저당권 유무, 면적, 임차료 등을 확인

〈그림 6〉 방위시설 토지매각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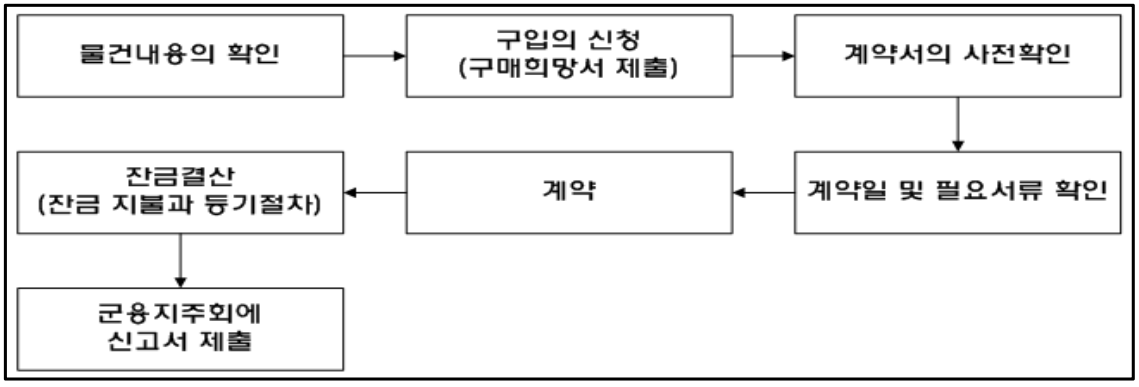

○ 구입을 희망하는 자가 구매희망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사전확인
  - 계약서의 사전 확인은 면적, 소재지, 저당권의 유무, 착수금, 잔금의 지불시기, 토지명의인 등을 사전에 확인

○ 확인이 끝나면 계약을 완료하고, 잔금 결산, 이후 마지막으로 군용지주회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군용지의 매수절차 완료

5. 특정국유재산 정비 특별 회계의 설치

○ 특정 국유재산 정비 특별 회계는 청사 및 숙소 등의 시설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그 효율적인 사용과 적정한 배치를 도모하기 위해, 집약 입체화 또는 이전재배치에 의한 정비 계획(특정 국유재산 정비계획)에 근거해 실시되는 신시설의 취득 및 구시설의 처분에 관한 경리를 일반회계와 구분해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일반 재원에 의존하는 일 없이 실시하기 위한 회계이며, 일반회계로부터 구시설을 받아 들여 그 매각 수입으로 신시설을 정비하고 일반회계에 인도하는 업무를 실시

○ 시설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집약 입체화 또는 이전재배치에 의한 정비 계획에 의해 구시설의 매각 수입을 전망해 재정 융자 자금으로 먼저 차입 후 신시설의 정비를 실시하여 이전 후에 구시설을 매각해 차입금을 반제

〈그림 7〉 타 회계사이에서의 재정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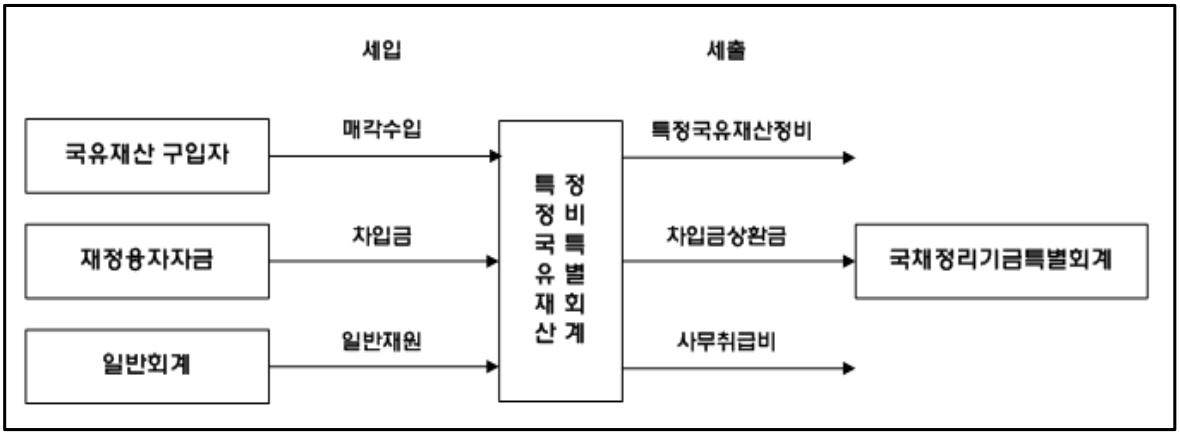

○ 또한 교부금으로는 국유 제공 시설 등 소재 시나 마을 조성 교부금(기지 교부금)과 시설 등 소재 시나 마을 조정 교부금(조정 교부금)이 있음

○ 이러한 교부금은 미군 기지, 미국 군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임시 특례 법“의 적용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어 재정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아 세입에 있어서 손실을 보고 있음

- 이러한 손실을 보충하기 때문에 "국유 제공 시설 등 소재 시나 마을 조성 교부금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나라가 미군에 제공하고 있는 시설 내에 있는 국유 자산 및 자위대가 사용하는 비행장 등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시 마을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고 기지 교부금으로 교부
- 이 교부금은 재무부의 국유 재산 대장이 대상이며 미군 소유 자산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시설 등 소재 시나 마을 조정 교부금 요강"이 고시되어 미군 및 미국 군인 등에 관련된 고정 자산세, 주민세 등 비과세 조치에 따른 세 재정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정 교부금으로 교부

1) 국유 제공 시설 등 소재 시나 마을 조성 교부금(기지 교부금)

○ 기지 교부금은 “국유 제공 시설 등 소재 시나 마을 조성 교부금에 관한 법률“(쇼와 32년 법률 제10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가 소유하는 고정 자산 가운데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고정 자산(토지, 건물 및 공작물과 자위대가 사용하는 고정 자산 대장 가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교부됨

○ 용처를 제한되지 않고 일반 재원으로 교부될 것이지만, 고정 자산세, 국유 자산 등 소재 시나 마을 교부금(고정 자산 상당액)과 달리 시읍면의 특별 재정 수요에 대한 재정 보완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 교부세의 기준 재정 수입액의 산정에는 산입되지 않음

○ 교부금의 배분은 매년 예산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되며 교부금의 액수는 다음의 금액의 합산 금액으로 함

- 1. 교부금 총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해 3월 31일(전년도의 말일)현재 소재하는 대상 자산 가격의 합산 금액에 안분한 금액.
- 2. 교부금 총액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 자산의 종류 및 용

도, 시읍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정촌에 총무 대신이 배분한 금액.

2) 시설 등 소재 시나 마을 조정 교부금(조정 교부금)

○ 조정 교부금은 시설 등 소재 시나 마을 조정 교부금 교부 요강의 정하는 바에 의한 미군 자산에 관련된 세제 특례 조치 등(고정 자산세, 주민세 등의 비과세)의 시읍면이 재정상의 영향을 받아 재정 조치에 불균형이 인정되는 경우, 미군 시설 구역이 소재하는 시읍면의 재정 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부됨

○ 조정 교부금의 배분은 입법 조치에 의하지 않고 "시설 등 소재 시나 마을 조정 교부금 요강"(쇼와 45년 11월 6일 자치부 고시 제224호)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되며, 그 액수는 다음의 금액의 합산 금액으로 정해짐

- 1. 조정 교부금의 총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시 읍면 소재 미군 자산의 가격을 기초로서 총무 대신이 배분한 금액.
- 2. 조정 교부금의 총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군 관계의 비과세 조치의 영향, 기타 시읍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총무 대신이 배분한 금액.

3) 헤세이 29년 분 기지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의 결정

○ 기지교부금 및 조정 교부금의 교부 요강에 근거하여 2017년(평성29년)의 교부 금액은 다음의 표9와 같음

<표 7> 2017년 기지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결정액

(단위 : 백만엔, 단체)

구분	배분총액	대상시정촌
기지교부금	28,340	298
조정교부금	7,200	53
계	35,540	351(실제 단체수 299)

자료:2017년(평성29년) 국유제공시설등 소재 시정촌 조성 교부금 및 시설 등 소재 시정촌 조정 교부금 교부액 일람표(2017), 총무성

4) 특정 국유재산 정비 계획의 사례

○ 사이타마 광역 합동 청사 이전 사례(평성 4년도 헤세이 12년도)

- 「행정 기관 등의 이전에 대해(쇼와 63년 7월 19일 각의 결정)에 의해 관동 재무국 등 13개 행정 기관이 오오테마치 합동 청사를 처분하고 사이타마시에 집약 입체화해 신청사를 정비한 사례

○ 방위청 본청 이치가야 청사 이전 사례(쇼와 63년도 헤세이 13년도)

- 록본기 방위청 청사 주변지역의 상업화 등으로 인해 본청사 등을 처분하고 이치가야 주둔지 등에 이전재배치 사례

〈그림 8〉 특정 국유재산 정비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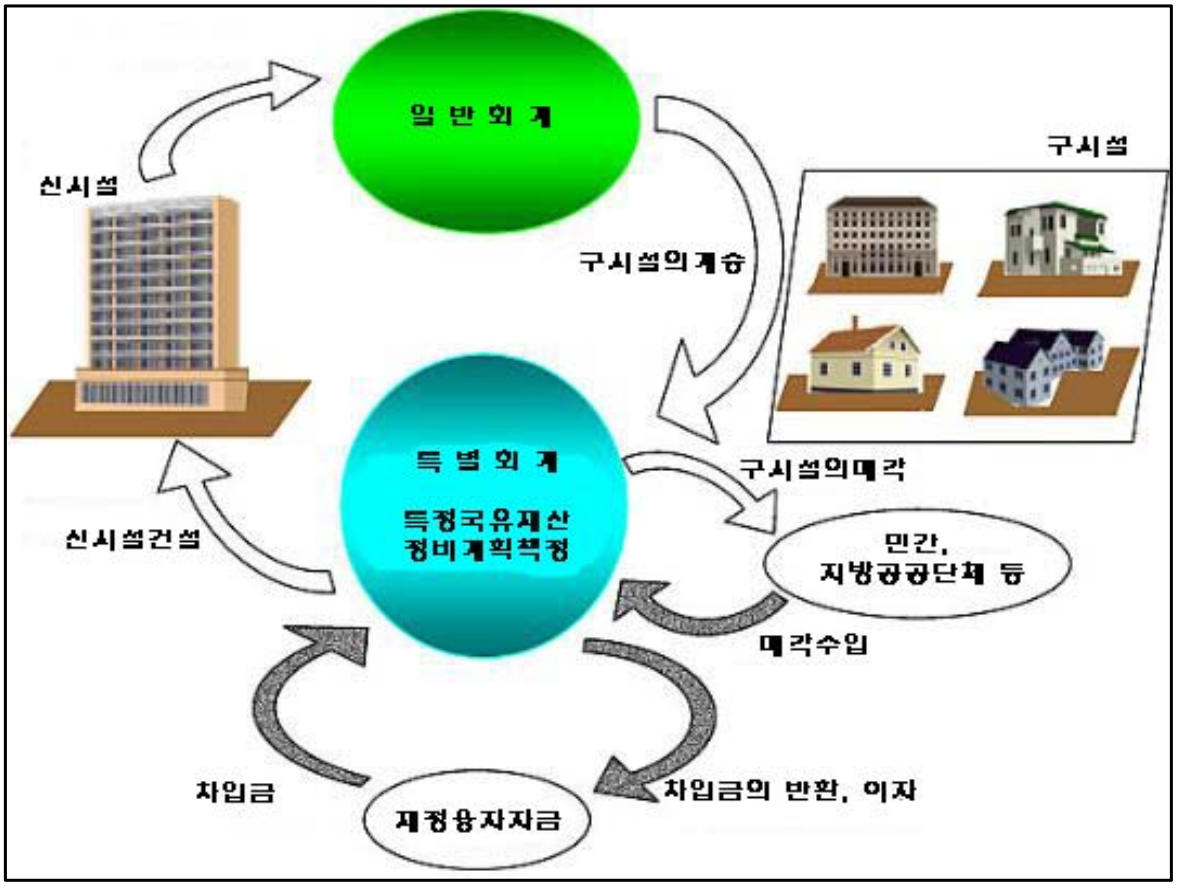

6. 군사시설 관련 타법 특례 조항 검토

1)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토지 등의 방위시설에 해당하는 보통재산은 제6조에 의해 재무장관이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 의해 시행령으로 정한 특별회계에 속한 것에 있어서는 제6조에 관계없이 해당재산을 관할한 각 정부부처에서 관리, 처분하도록 규정

2) 공간계획상에서의 군사시설 특례조항

○ 일본은 자위대법에서 공간계획 상에서의 군사시설 제외조항 또는 특례조항을 정하고 있음

- 토지수용법, 토지구획정리법,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도시녹지법, 경관법, 하천법, 건축기준법 등 공간계획 과련 법령과의 관계에서의 특례조항 또는 제외조항을 두고 있음

〈표 8〉 공간계획상에서의 군사시설 특례조항

법령명	법령 내용
하천법의 특례	제115조의 17 ·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동을 명령받고, 또는 제77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령받았던 자위대의 부대등이 하천법(쇼와39년 법률제167호) 제23조로부터 제25조까지,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555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허가를 필요로 한 행위(동법 제27조제4항에 규정한 일정한 하천 구역내의 토지에 있어서 토지의 굴착, 성토 등을 제외한다.) 를 하려고 한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95조(동법 제100조 제1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 있어 동일) 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철수를 명령받거나, 또는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해제되기까지는 동법 제95조「나라와 하천 관리자와의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써 이러한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인정이 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은 「이러한 규정에 관계없이 나라가 미리 하천 관리자에게 해당행위를 하려고 한 취지를 통지한 것으로써 한다」로 갈음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법 제95조의 통지를 받았던 하천 관리자는, 하천의 관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 해당 통지에 관계된 부대 등의 장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건축기준법의 특례	제115조의 7 ·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동을 명령받고, 또는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령받았던 자위대의 부대 등이 행한 파손된 건축물의 응급 수선 또는 응급 가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해서는 건축기준법(쇼와 25년 법률 제201호) 제85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조 제3항 본문 중「그 건축 공사를 완료한 후 3월을 초과하고」는「자위대법(쇼와 29년 법률 제165호) 제76조제2항 또는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법률(평성 15년 법률 제79호) 제9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철수를 명령받거나 또는 자위대법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해제된 후에 있어도 」로, 「일이 생기기 전에, 특정행정청의 허가」는「해당 철수의 명령 또는 명령의 해제가 있던 후 신속하게 특정행정청에 신청하고, 그 허가」로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도시계획법의 특례	제115조의 20 · 도시계획법(쇼와43년 법률 제100호)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 제42조 제1항 , 제43조 제1항, 제52조의 제1항 (동법 제57조의 삼제1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3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은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동을 명령받거나, 또는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령받았던 자위대의 부대 등이 응급 조치로서 행한 방어 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도시계획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한 자위대의 부대 등이 응급조치로서 행한 방어 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녹지법의 특례	제115조의 21 ·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동을 명령받고, 또는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령받았던 자위대의 부대 등이 응급 조치로서 행한 방어 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에 있어서 도시 녹지 법(쇼와 48년 법률 제72호)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허가를 필요로 한 것을 하려고 한 경우에 있어서 동조 제8항 후단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의「지자체의 장에게 협의하지 않는다면」는 「동항의 허가의 권한을 갖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다면」로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갈음되어진 도시 녹지 법제14조 제8항의 통지를 받았던 자는, 녹지의 보전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통지를 한 부대 등의 장에 대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한 자위대의 부대등이 응급 조치로서 행한 방위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가 도시 녹지 법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허가를 필요로 한 것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조례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전2항의 규정의 예외로 한다.
경관법의 특례	제115조의 22 · 경관 법(평성16년 법률 제110호) 제16조 제1항 , 제22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규정은,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동을 명령받거나, 또는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령받았던 자위대의 부대 등이 응급 조치로서 행한 방어 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경관 법 제73조 제1항 또는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은 전항에 규정한 자위대의 부대 등이 응급 조치로서 행한 방어 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항에 규정한 자위대의 부대등이 행한 파손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응급의 수선 또는 응급 가설 건축물의 건축 (경관 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건축 등을 말한다.) 또는 응급 가설 공작물의 건설 (동항 제2호에 규정한 건설 등을 말한다.) 또는 설치에 관해서는, 동법 제77조 제1항, 제3항 본문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동조 제3항 본문 중 「그 공사를 완료한 후 3월을 초과하고」 는 「자위대법 제76조 제2항 또는 무력 공격 사태 등에 있어서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법률(평성 15년 법률 제79호) 제9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철수를 명령받거나, 또는 자위대법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해제된 후에 있어도 」로, 「그 초과한 것이 된 일 전에 시읍면장에 허가」 는 「해당 철수의 명령 또는 명령의 해제가 있던 후, 신속하게 시읍면장에 신청하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한다.
토지수용법의 특례	제115조의 9 · 토지수용법(쇼와 26년 법률 제219호) 제28조의 제1항의(동법 제138조제1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은,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동을 명령받거나, 또는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령받았던 자위대의 부대 등이 응급 조치로서 행한 방어 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구획정리 법의 특례	제115조의 12 · 토지구획정리 법(쇼와 29년 법률 제119호) 제76조제1항의 규정은,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동을 명령받거나, 또는 제77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령받았던 자위대의 부대 등이 응급 조치로서 행한 방어 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공원법의 특례	제115조의 13 ·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동을 명령받고, 또는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령받았던 자위대의 부대등이 행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 예정 구역의 점용에 대한 도시공원 법(쇼와 31년 법률 제79호) 제9(동법 제33조제 4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 있어 동일.) 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철수를 명령받고, 또는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해제되기 까지의 사이는 , 동법 제9조 중 「제7조 각호에 언급한 공작물」 라고 있는 것은 「공작물」 라고 , 「라고 공원관리자와의 협의가 성립한 것」 라고 있는 것은 「가 미리 공원관리자에 점용의 목적, 점용의 기간, 점용의 장소 및 공작물 그 밖의 물건 또는 시설의 구조를 통지한 것」 라고 지난다.이 경우에 있어, 동법 제27조(동법 제33조제 4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은 , 적용하지 않는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바꾸어 읽여 진 도시공원 법제9조의 통지를 받았던 공원관리자는 , 도시공원의 관리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때는, 해당 통지에 관계된 부대등의 장에 대하고 의견을 말한 것을 할 수 있다. 3 도시공원 법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은 ,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출동을 명령받고, 또는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령받았던 자위대의 부대등이 응급 조치로서 행한 방어 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공원법의 특례	제115조의 15 ·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출동을 명령받거나 또는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령받았던 자위대의 부대 등이 응급조치로서 행한 방어 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는 자연공원법(쇼와 32년 법률 제161호) 제20조 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한 경우에 있어서 동법 제23조제3항 단서, 제68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법 제23조제3항 제1호 중 「제6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 는 「자위대법(쇼와 29년 법률 제165호) 제115조의 15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6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로, 동법 제68조제1항 중 「협의하지 않는다면」 은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로, 동조 제3항 중 「이러한 규정에 의한 신고의 예에 의하고」 는 「미리」 로 갈음 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갈음된 자연공원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았던 환경 장관 또는 지자체 장은, 자연공원의 보호 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통지를 한 부대등의 장에 대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제1항에 규정한 자위대의 부대 등이 응급 조치로서 행한 방어 시설의 구축 그 밖의 행위가 자연공원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한 것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조례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전2항의 규정의 예외로 한다.

Ⅳ. 일본 국방·군사시설 이전 사례

1. 주일미군 기지 종합계획 : 관동계획

○ 관동계획은 1970년대의 주일미군기지의 통합 계획임

- 도시화 진행에 따라 관동평야에 소재하는 미국 공군기지를 감축하고 요코타 기지로 통합하는 동시에 6개의 기지를 일본 측에 반환한다는 계획임

○ 1960년대 후반, 주일미군기지의 재편 계획에 따라 미•일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포괄적인 미군기지 재편정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의 토지를 반환받는 대신 요코타 기지에 대체 시설을 건설하였으며, 건설 경비는 일본이 부담하였음

○ 반환대상의 기지는 관동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6개의 미군 기지였으며, 전체면적 약 2천 219만㎡, 건물 약 105만㎡였음

- 후추 공군 시설의 대부분(반환일 1975년 6월 30일), 토지 약 56만 평방미터, 건물 약 14만㎡
- 캠프 아사카(미나미 지구)의 대부분(반환일 1978년 7월 10일), 토지 약 123만 평방 미터, 건물 약 4만 7천㎡
- 타치카와 비행장(야마토 항공 시설을 포함.)(반환일 1977년 11월 30일), 토지 약 602만 평방 미터, 건물 약 54만 평방 미터
- 관동 마을 주택 지구 (반환일 1974년 12월 10일), 토지 약 127만 평방미터, 건물 약 16만㎡
- 존슨 비행장 주택 지구의 대부분(반환일 1973년 6월 29일), 토지 약 164만 평방 미터, 건물 약 17만㎡
- 미토 공대지발 폭격장(반환일 1973년 3월 15일), 토지 약 1센 148만 평방 미터, 건물 약 1천㎡

○ 반환시에 필요한 대체시설의 건설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였음

- 1973년 6월 시점의 계획에서는 주택 275호, 사령부 사무소, 병원, 창고 등의 약 17만㎡ 건물을 약 220억엔의 지출로 1976년 3월까지 건설할 것으로 계획함.

- 그러나 실제 공사에서는 지출액이 약 425억엔으로 당초 계획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사무비 등을 포함하면 총 450억엔이 집행되었음

○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면적 5만 2천㎡, 예산 약 70억엔이었음

- 사무소 등(1만 6천㎡)에 약45억엔, 창고(4만 4천㎡)에 약32억엔, 숙소(2만 5천㎡)에 약30억엔, 후생시설(1만 5천㎡)에 약28억엔, 병원시설(8천㎡)에 약19억엔, 공작물 등 기타에 약156억엔이 소요되었음
- 주택은 고층 주택이 210호, 장군용 단독 주택이 3호, 기타 일반 주택 등 총 270호를 건설하였음
- 단독(400평 초과)은 물론 고층 주택에서도 한호당 면적은 136㎡로 자위대 관사나 일반 주택과 비교하여 상당히 큰 규모였으며, 이는 미국 국방부 건설 기준의 건설로 미●일의 주거 환경의 차이에 의한 것이였음

○ 동경도 내에는 현재 7개의 미군 기지가 있고, 총 면적은 약 1,601헥타르임(도쿄 돔 약 340개의 넓이)

- 전국에는 총 128개 미군 기지가 있고, 총 면적은 약 98,026헥타르

〈표 9〉 현 동경도 내 미군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용도	면적	관리부대
아카사카 프레스센터	미나토구	사무소 (성조기 신문사, 관사, 헬리콥터 착륙장	26,938㎡	미육군 기지관리본부
요코다비행장	다치카와 시, 아키 시마 시, 훗사 시, 무사시 무라야마 시, 하무라 시, 미즈호 정(사이타마 현 사야마 시)	비행장 (활주로(약3,350m×약60m)、주댁、학교、사무소등)	7,136,404㎡ ※(7,139,452㎡)	미공군제３７４공수항공단
후츄통신시설	후츄시	통신 (사무소, 통신시설)	16,618㎡	미공군제３７４공수항공단
타마 서비스 보조시설	다마시、이나기시	레크리에이션 시설 (골프장、캠프장장 등)	1,948,345㎡	미공군제３７４공수항공단
오오와타 통신소	아야세시 (사이타마현 니자시)	통신 (통신시설)	247,056㎡ ※(1,197,735㎡)	미공군제３７４공수항공단
류황도통신소	오다와라	통신 (훈련시설)	6,630,688㎡	미해군후목항공시설대
뉴산노 미군센터	미나토구	기타 (관사)	7,243㎡	미해군횡수하기지
합 계			16,013,292㎡	

1) 그랜드하이츠 반환

○ 미공군의 기존 주택 시설을 요코타 기지로 이전·통합하면서 그랜드 하이츠 주택 지구 및 무사시노 주택 지구(그린 파크)를 조성하였음

- 그랜드 하이츠는 도쿄도 네리마구와 이타바시구에 걸쳐 미공군비행장을 1947년 3월에 반환받아 그 자리에 일본 정부가 주택을 건설하여 미군에 제공
- 토지 약 183만 평방 미터, 건물 740동(주택 1센 486문)에 이르는 규모의 주택 지구였음
- 주로 다치카와, 요코, 후츄의 각 기지로 통근하는 군인 등의 가족 주택과 숙소, 창고, 학교 등에 사용되었음

○ 이러한 가운데 현지의 네리마 구, 도쿄도 그리고 일본주택공단(UR도시기구) 등에서 주택과 도로 등의 용지로의 사용을 요청하여, 방위시설청이 1968년부터 미국 측과 반환 협상을 진행함

○ 1969년 3월에 미국에서 무사시노시 소재의 무사시노 주택 지구(약 13만㎡, 699호)를 포함한 다른 기지 내에 대체 시설의 제공을 조건으로 반환 협상을 진행

〈그림 9〉 1974년 그랜드 하이츠 지구 항공사

〈그림 10〉 현재의 그래드 하이츠 지구

○ 1971년 8월, 기지 이전을 포함한 지위 협정의 실시에 관한 합의 기관인 미일 합동 위원회에서 반환 및 이전을 합의하고 대체 시설을 1974년 3월 말까지 요코타 기지 내에 건립하기로 결정

- **대체시설은 "특정 국유 재산 정비 특별 회계"에 의해 1천 50호의 주택과 부대 시설을 1970년도에 총액 약250억엔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진행

○ 이 계획 이후에 대체 시설을 일본 정부의 부담하여 요코타기지 내에 건설하고 기존의 사용시설을 일본에 반환하는 사업이 활발히 이뤄짐. 또한 요코타 기지에서는 하무라 학교 지구, 니이쿠라 창고 지구의 대체 시설 건설도 이뤄짐

〈그림 11〉 그랜드 하이츠 공동주택

〈그림 12〉 그랜드 하이츠 공동주택과 히카리가오리공원을 연결하는 입체도로

2) 캠프 아사카 반환

- 1945년(쇼와20년) 9월에 미군이 옛 육군 피복창 철거지에 진주하면서 오랫동안 미군 기지 “캠프 아사카(CAMP DRAKE)“로 사용
- 1965년(쇼와40년)경부터 기지 반환 요구 운동이 시작되어 1974년(쇼와49년) 8월 캠프 아사카의 반환이 결정됨
- 반환기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미군 제공 재산 환수 후의 이용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라 1981년(쇼와53년)에 “캠프 아사카 반환 부지의 이용 기본 구상“을 수립하고, 일본정부(우체국 등), 현(보건소 등), 시(중앙공원, 중앙공민관 등)의 정비가 진행되었으며, 약19.4ha의 토지는 유보지로 남겨놓음
- 아사카시에서는 반환지의 시(市) 이용분을 대상으로 2006년 12월 “아사카시 기지 철거지 이용 기본 계획“과 2007년 12월 “아사카시 기지 철거지 정비 계획“을 수립 이후 일본 정부 및 재무성 국유재산 관동지방 심의회를 통해 2008년 최종 확정됨
- 계획에서는 기지부지와 그 주변의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약50.5ha의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2009년 2월에 아사카시 도시 계획 지구계획으로 “기지철거지 지구계획“을 결정
- 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라 “심볼 공원의 조성“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무가와 시민으로 구성하는 “아사카시 기지 철거지 심볼공원정비 기본계획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생태계와 식생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의 현지견학, 의견교환회 등을 추진하여 2010년 3월에 “기지 철거지 심볼공원정비 기본계획서“를 책정
- 또한, 반환기지 중 일부(3ha)를 공무원관사로 건설하기로 하고, 부대시설로써 아동관과 여성 센터, 휴일 야간 진료소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일본정부의 보류 결정에 따라 중단됨
- 이에 중단 결정에 따라 해당부지는 미이용지가 되어 향후 이용방향이 정해지기 까지 잠정적으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재무성에 요청하고 2014년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재의 공원으로 이용 중
- 현재 아사카시에서는 아사카시 기지 철거지 이용 계획의 재검토 작업을 진행중에 있음

〈그림 13〉 아사카시 도시계획도 및 반환기지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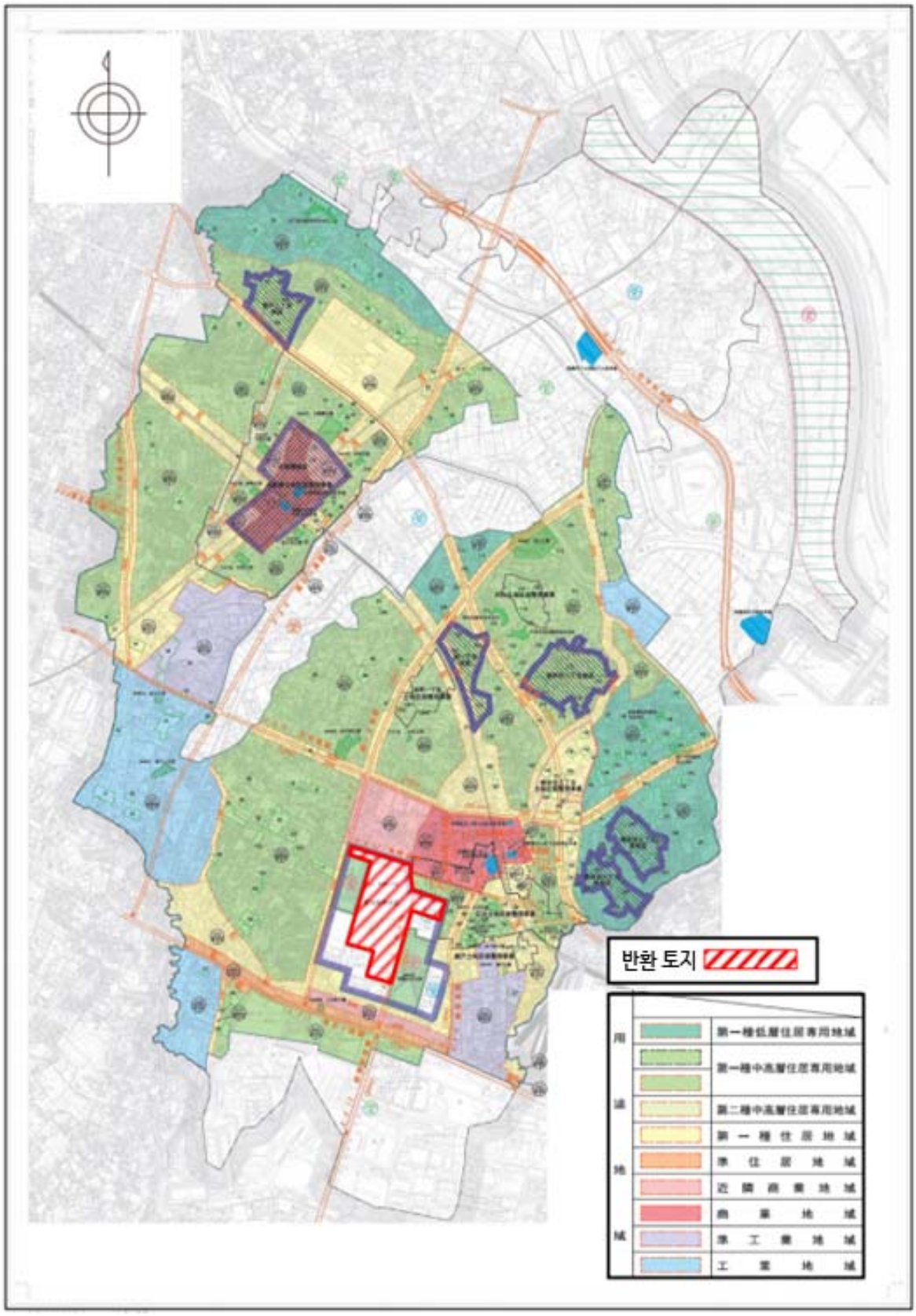

자료:아사카시(2015),)아사카시 기지 이용계획(개정안)

○ 현 반환지의 토지이용은 부지①(0.9ha)과 부지②(0.1ha)의 경우 아사카 세무서, 아사카 공공 직업 안정소(예정), 아오바 다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이용 중이며, 부지①의 일부는 아오바다이 공원 제2주차장, 소방 훈련장으로 잠정 이용중에 있음

○ 또한, 부지③(16.4ha)는 국가 공무원 관사 건설이 예정됐던 곳으로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잠정 이용중이며, 주위에 아사카 중앙공원, 아오바다이 공원, 아사카 제1중학교, 아사카 도서관, 아사카 보건소 등의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음

〈그림 14〉 반환지 토지이용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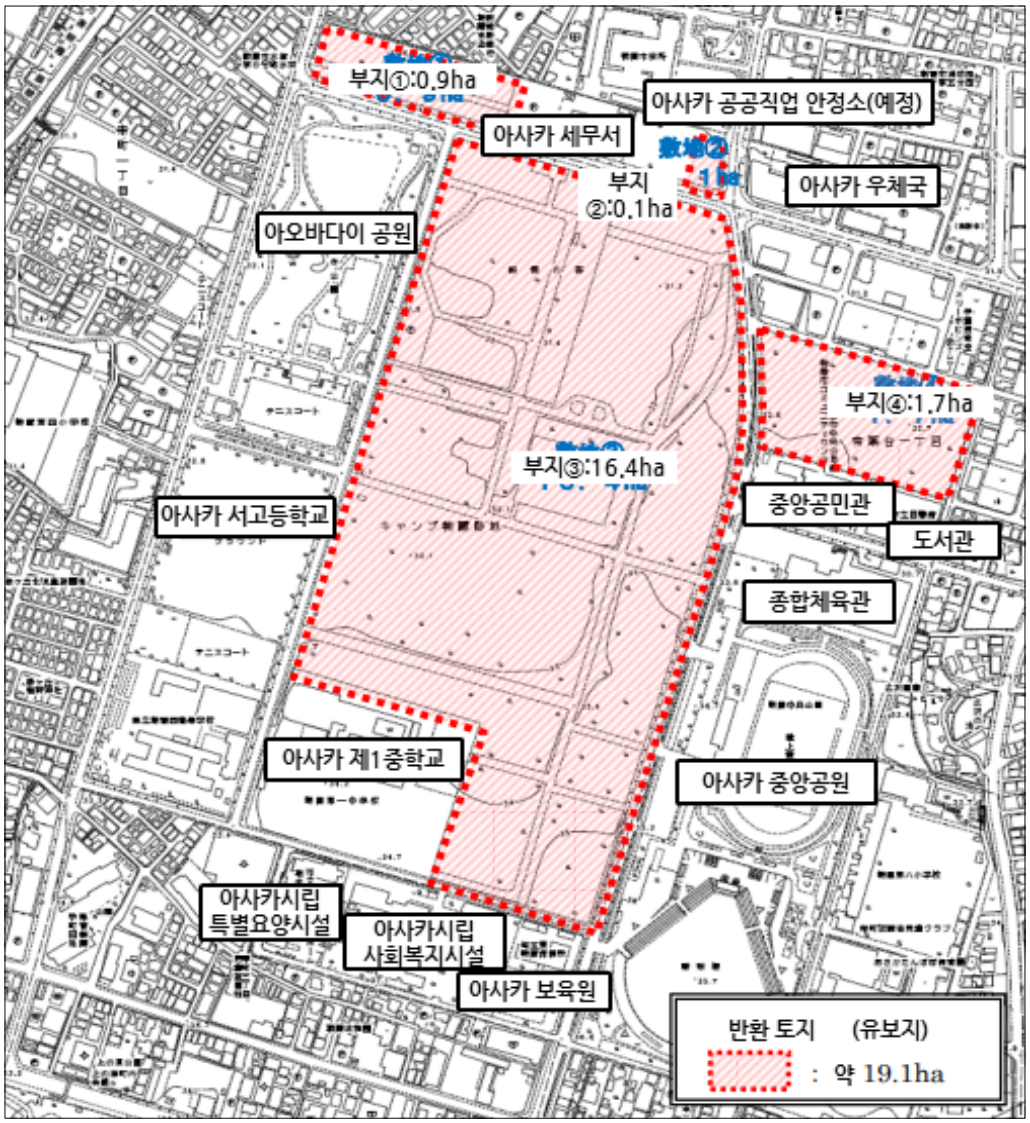

자료:아사카시(2015),)아사카시 기지 이용계획(개정안)

〈그림 15〉 현재의 반환부지 위성사진

자료:구글어스

〈표 10〉 반환부지의 정비완료 시설 현황

시설명	정비주체	개설년도	면적
아사카 제8초등학교	아사카시	쇼와51	1.9ha
아사카 제4중학교	아사카시	쇼와52	1.9ha
아사카중앙공원	아사카시	쇼와57	7.1ha
종합체육관	아사카시	쇼와57	1.0ha
아오바다이 공원	아사카시	쇼와58	3.8ha
중앙공민관 커뮤니티센터	아사카시	쇼와59	0.5ha
노인요양시설	아사카시	쇼와61	0.5ha
도서관	아사카시	쇼와62	0.4ha
아사카 제1중학교	아사카시	평성14	2.5ha
도시개발용지 (히로사와토지구획정리)	아사카시	평성18	3.1ha
아사카 서(西)고등학교	사이타마현	쇼와54	4.0ha
아사카 보육원	사이타마현	쇼와58	0.5ha
사회복지시설	사이타마현	쇼와58	1.4ha
아사카 우체국	중앙정부	쇼와59	0.4ha
아사카 세무서	중앙정부	평성4	0.5ha
(예정)아사카 공공직업안정소	중앙정부	–	0.3ha

자료:아사카시 홈페이지, http://www.city.asaka.lg.jp/soshiki/2/kitiatotiriyou.html

○ 용지 취득비의 경우, 현 재무성으로부터 관리 위탁에 의한 잠정이용과 관련하여서는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대여 중이며, 향후 시가 이용방향을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시가 정비할 계획임

○ 이때에는 국유재산특별조치법 및 반환재산의 처분방침에 따라 공원의 경우, 3분의2는 무상대여, 나머지 3분의1은 시가매각의 형태로 처분될 것으로 예상

〈표 11〉 예상 용지취득비

토지이용	면적	용지취득비	비고
공원용지	14.6ha	9,198,000천엔	1/3 시부담
도로용지	1.9ha	0엔	도로법에 의해 무상대여
공공시설용지	1.7ha	4,233,000천엔	전액 시부담
업무계시설용지	0.9ha	-	상세미설정
합계	19.1ha	13,431,000천엔	-

자료:아사카시(2015),)아사카시 기지 이용계획(개정안)

○ 업무계시설용지의 경우에는 재무성 및 사이타마현과 협의를 통해 처분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임

[아사카시청 공원녹지과 면담]

○ 유보지에 대한 소유권은 현재 재무성에 있으며, 시청으로 이관될 예정

○ 이관된 이후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는 임시공원으로 활용 중

○ 개발 시 개발계획은 시에서 수립하고 시의 재정이 투입되나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음

〈아사카시청 공원녹지과 인터뷰(좌), 유보지(우)〉

〈그림 16〉 캠프아사카 반환 지역 중 유보지

〈그림 17〉 캠프아사카 반환 지역 내 고용센터

3) 타치카와 비행장 반환

○ 타치카와 비행장은 1922년 육군항공 제5대군이 기후현 카카미가하라에서 타치카와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어, 1945년 8월 제 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구 육군비행장으로 사용됨

○ 종전 후 1945년 9월부터 미공군이 이주하여 미군기지로 사용되어 당시 극동아시아의 주요 공군수송기지로 사용

○ 1973년에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합의된 관동계획(관동평야지역의 미군시설에 관한 정리통합계획) 의해 미군은 요코타비행장으로 이설

○ 1973년에 일부 민간소유의 토지가 선행되어 반환되었고, 1977년 11월 30일에 일본에 전면 반환. 반환 시 건물은 활주로 등의 비행장시설 및 병영 등이었으며, 이후 이전부지 이용사업에 의해 아위대 활주로의 신설을 포함하여 재정비

○ 1970년 타치카와시의회의 「타치카와기지의 평화이용에 관하여」 결의, 1971년 도쿄도의 타치카와기지 이전부지의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광장과 청공의 도쿄 구상」 발표 등을 거치며 기초자지단체의 타치카와기지 이전부지 이용을 위한 논의 시작

○ 1977년에 합의, 발표한 「타치카와 기지 이전부지 이용 계획(지자체 안(案))」 은 업무지구, 공원, 대학, 주택 등을 골자로 한 이용계획을 담고 있음

○ 대도시 및 그 주변 소재의 대규모 반환재산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략 그 면적을 3등분하여 1) 현지 지방공공단체 등이 이용, 2) 국가, 정부관계기관 등이 이용, 3) 당분간 처분 유보 와 같은 3분할 원칙에 의해 계획

○ 광역방재기지

- 미나미 칸토지역의 인구 및 중핵관리기능 집중현황을 배경으로, 해당 지역의 지진 및 대규모 재난 시 대책의 필요성에 따라 광역방재기지를 설치
- 미나미칸토지역의 광역적 재해발생 시, 응급재해대책활동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재해대책실시본부, 경찰 및 소방 등의 방재관계기관 설치, 재해정보 수집연락 및 구원활동을 위한 자위대 비행기지, 비축창고, 의료시설 등의 집중배치

○ 업무시가지

- JR 타치카와시와 인접한 동남부에 공공기관, 민간사무소 등 업무시설을 입지시키고, 역 북쪽출구의 재개발과 관련한 시가지 정비를 위한 용지
- 히가시 나카카미 역과 인접한 서남부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시설을 입지시키고, 시가지형성을 위해 가스 및 전력 등 기반시설을 제공

○ 유보지

- 용도 결정이 유보된 곳

〈표 13〉 타치카와 기지 이전지역 계획(대장성 국유재산관리위원회 안)

구분	면적
대규모공원	약 180 ha
광역방재기지	약115 ha
업무시가지	약 30 ha
간선도로	약 30 ha
유보지	약 110 ha
합계	약 466 ha

출처 : 도쿄의 미군기지 2012, 도쿄도 발췌

〈그림 18〉 타치카와 업무시가지

2. 방위청(행정재산) 이전 사례 : 미드타운

○ 미드타운은 일본 방위청이 이전한 부지에 건설된 중심상업지구로 초고밀도로 조성됨

○ 메이지시대 육군 주둔지였으나 종전 후 미군장교 숙소로 사용되었고, 일본으로 반환된 다음 약 400년간 방위청 청사로 이용되며 폐쇄 된 토지로 사용됨

〈그림 19〉 미군장교숙소 사용시

〈그림 20〉 방위청 사용시

○ 1988년 방위시설청 건설부 건설기획과에 '청사 등 이전공사실'이 설치, 1991년 도쿄도 건설부 건설기획과에 '방위청 본청 청사 등 이전공사실'이 설치되어 해당 사업을 전담함

○ 1999년 국유재산 관동지방심의회가 '방위청 본청 히노키쵸 청사 부지의 처분에 대해서'라는 정부 답신 결과를 바탕으로 재무성, 도쿄도, 미나토구 공동으로 부지개발에 관한 3자 협의회를 설치

○ 부지 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진행하지만, 행정 측의 의도와 가까운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설정

○ 2000년 방위청 본청이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2001년 6개사가 컨소시엄을 체결, 민간 도시 재생사업으로 진행하여 2007년 3월 오픈

○ 국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히노키쵸 공원을 제외한 부지는

670%의 용적률로 사무실, 주택, 아파트, 호텔, 병원, 상업시설 등이 고밀도로 조성

○ 현재 히노키쵸 공원을 통해 도심 내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하였고, 롯폰기 지역과 연계하여 문화·디자인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관을 유치함에 따라 유동인구 증가, 지가 상승을 유도

〈그림 21〉 미드타운 내 히노키쵸 공원

〈그림 22〉 미드타운 상업지구